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93 (2022. 12. 19 ~ 12. 23)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공정거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을 가맹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선 범위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공정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SG, 기업송무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협의한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인권과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조세	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공포 법령	ESG, 에너지인프라	④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법에 따른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시장 도입 등을 추진.
입법/ 행정예고	건설/부동산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대방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고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2조의8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등).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F2E1H2X1C3L1K6T0M8T4B4G5R6S3	서울경제 22.12.16.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강매' 금지…김한규, 가맹사업법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XC9WZQN	22.12.15.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특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등에 관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정(1978년) 당시에는 국내 산업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되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즉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인도의 제철소(2005년 ~ 2015년), 인도네시아의 팜유(2008년 ~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논란이 있었음. 또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원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군부 및 군부가 통제하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의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조치가 없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인권과 환경에 관한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등을 통하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인의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을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due diligence)와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 제2항 및 제24조의3제3호 각각 신설).	이데일리 22.12.19. 해외자원개발 철수?..상사업계, ESG에 발목잡힐라 ‘좌불안석’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32406632560160&mediaCodeNo=257&OutLnkChk=Y	**22.12.08.**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4조의2제5호 각각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O2T1B1I1F5G1N4A5R4M1T7O9D7E2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 ·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안 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 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 ·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이데일리 22.12.18.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15606632556224&mediaCodeNo=257&OutLnkChk=Y	**22.09.01.** **제안** **22.11.18.**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2.11.21.** **소위 상정/** **축조심사** **22.11.22.** **소위 상정/** **축조심사**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안 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안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대주주'에서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고액주주'로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아.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안 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K2Z2E0Y9H0Z1Y1L1L5U9C2U1C1U3I1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수소로 발전한 전기의 판매 · 공급과 관련된 수소발전량 구매 · 공급제도와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발전량을 구매 ·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자 및 구매 ·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수소발전량의 구매 ·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회수,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발전량의 구매 · 공급자 및 구매 · 공급량(제34조의2 신설)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정하고,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수소발전사업자로 정함.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 ·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은 구매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직전 연도 전력거래량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배분한 수소발전량으로 정하고, 공급의 경우 수소발전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으로 정함. 나.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기준(제34조의3제1항 신설)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기준을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등으로 정함.	파이낸셜뉴스 22.12.14. 수소법 개정안 시행...기업투자 활성화에 2% 부족 https://www.fnnews.com/news/202212121554180288	**22.12.14. 일부개정** **22.12.14.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다. 구매 · 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제34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거나 수소발전사업자가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기준(제34조의7 신설)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수소발전량의 계량 · 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춘 기관 · 단체 또는 법인으로 정함. 출처:https://www.law.go.kr/법령/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이하 '무순위 청약'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으나,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또한 공급대상자에 포함.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 크기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크기별 구분을 세분화 및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공급 물량 추가 확보. ■ 주요내용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상자 확대 나.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다.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 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동아일보 22.12.15. 서울 중소형 아파트, 내년 4월부터 최대 60% 추첨제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5/117003931/1	22.12.16. ~ 23.01.25.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구분 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사.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130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중처법 1년, 현장은 여전히 혼란…대응 못하면 ESG 공급망서 제외될수도"(2022.12.2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1000342

주요내용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은 대륙아주·헤럴드경제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최고안전책임자가 일선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더라도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현장-CSO-CEO에 이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함.

차 본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2차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업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함. 이를 위해 민간의 중대재해법 이행 인증제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륙아주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를 평가와 컨설팅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사설 인증제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함.

최근 윤 대통령이 법에 대한 보완작업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힘. 현재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 지배관계'라는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모호한 만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잘 잡아야 하고, 다만 중대재해법을 폐지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기사] 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내년 시행(2022.12.19.)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9043500061?input=1195m

주요내용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함. 우선 현행법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음.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함.

[국민일보][기사]"위험 작업, 사설업체 불러라"…중대재해처벌법의 역설(2022.12.1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8569&code=11131100&cp=nv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만한 작업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가 생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법 취지지만, 위험이 있는 일을 영세 하청업체로 넘기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박모씨는 고장난 에어컨 실외기 AS를 요청했지만 제품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서비스센터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서비스센터 측은 추락을 막아줄 난간이 1m 높이밖에 되지 않아 사다리 등을 이용해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기 어려워, 난간을 높이는 공사를 하거나, 사설 업체를 통해 실외기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면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답함. 이에 대해 빌딩 관리 업체는 난간 자체를 높일 수 없다며 거절했고, 방안은 사설 업체를 통해 실외기를 떼어서 실내로 옮기는 방법 뿐이었음. 해당 업체는 에어컨 수리를 하던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지난 7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송치된 적이 있어, 안전 매뉴얼이 강화됐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매뉴얼이 업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가 그 책임을 일부 떠안게 된 것이라며, 위험 작업이 또 다른 영세 업체들에 떠넘겨지는 건 위험의 외주화를 부르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법의 허점이라고 분석함.

[한국일보][기사] 똑같은 독성물질에 중대재해…대표 기소 엇갈린 이유는(2022.12.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402300002416?did=NA

주요내용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두 기업 모두 똑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는데, 두성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흥알앤티 대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보건조치 미이행)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음.

두 기업의 수사 결과는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었음.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9가지 의무 중 하나로 명시돼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외국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